

학과(부)평가 규정

규정 · 소관 미지정 · 현행 규정

개정 2026. 8. 31. · 시행 2026. 9. 1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14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7:49:23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학과(부)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과(부) 평가의 정의)

학과평가란 본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(이하 “학과(부)”라 한다.)별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과(부)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·평가하여 학과(부)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.

제3조(학과(부) 평가 대상)

-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(부)를 말한다.
- ② 통·폐합된 학과(부)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(부)에 통합하여 평가한다.
- ③ 신설된 학과(부)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되,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결과를 활용한다. <개정 2022-07-11>
- ④ 분리된 학과(부)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(부)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.
- ⑤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7-03-01>

제4조(학과(부) 평가의 시기)

학과(부)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차기년도 대학정보공시 시기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-07-09>

제2장 평가위원회

제5조(학과(부) 평가기획연구위원회)

- ① 학과(부)평가의 기획·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-07-09>
- ②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부총장, 각 처장, 총장특보,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-01-22>
-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, 서기는 IR센터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-01-22>
- ④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학과(부)평가 관련 규정의 제·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 2. 학과(부)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3. 학과(부)평가 기준,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4. 학과(부)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
 5. 학과(부)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 6. 학과(부)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7. 학과(부)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
 8. 그 밖의 학과(부)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⑤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과(부)평가심사위원회)

① 학과(부)평가를 위하여 학과(부)평가심사위원회(이하 '평가위원회'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12-07-09>

② 평가위원회는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기획처 평가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학과(부)평가에 한한다.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과(부)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
2. 학과(부)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
3. 학과(부)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
4. 학과(부)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5. 학과(부)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

⑤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학과(부)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)

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(부)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-07-09>

②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는 IR센터장(위원장), 평가담당(간사), 별표서식의 자료제공 부서 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

③ 위원장은 IR센터장, 간사는 IR센터 평가팀장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-01-22>

④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과(부)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
2. 학과(부)평가 기준,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
3. 학과(부)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⑤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

제8조(발전전략 수립)

학과(부)는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, 이 발전전략에는 학과(부)의 평가지표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9조(평가 항목 및 지표)

① 학과평가를 위하여 대내·외 대학평가의 주요지표를 활용한다.

② 학과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계열별 평가단위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[별표서식]과 같다.

<전면개정 2022-07-11>

제10조(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)

평가지표별 평가는 대학정보공시 입력 자료 및 자체산출 자료를 T 점수로 변환하여 적용하며,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-12-05>

제11조

삭제

제12조(평가자료 제출)

학과(부) 및 행정부서는 학과(부)평가 심사 1개월 전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-07-09>

제13조(평가 실시)

-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 <개정 2012-07-09>
-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학과(부)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학과(부)장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, 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실사)

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학과(부) 및 해당부서를 실사할 수 있다. <개정 2012-07-09>

제4장 <삭제 2022.07.11.>

제15조(평가결과의 공시)

- ① <삭제 2022-07-11>
- ② 학과(부)평가 결과는 학과평가심사위원회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7-03-01>

평가결과

80% 이상

60%이상~80%미만

30%이상~60%미만

15%이상~30%미만

15% 미만

등 급

S

A

B

C

D

제4장 평가결과의 반영<개정: 2022.07.11.>

제16조(평가결과 활용치)

-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(부)는 표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.

구 분

평가 순위

비 고

1위

2위

3위

포상 내용

1천만 원

700만 원

500만 원

학과(부)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

② 평가결과에 따라 학과(부)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수립, 모집정원조정, 교원 신규 채용, 우수학과 선정, 인센티브 반영,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의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③ 매년 정기 학과(부)평가 결과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획처와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 제출한다.

④ 평가결과가 미흡한 학과(부)는 학과 발전계획서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기술하여 기획처에 제출하고 기획처는 학과발전계획의 개선사항을 확인한다.

〈전면개정 2022-07-11〉

제17조

삭제

제17조의2

삭제

제18조

삭제

제18조의2

삭제

제19조

삭제

제20조

삭제

제21조

삭제

제5장 평가 운영 <개정: 2022.07.11.>

제22조(기타)

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학과(부)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며, 2011학년도 학과평가부터 적용한다.
4. 본 규정은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하며, 2012학년도 학과평가부터 적용한다.
5.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, 2012학년도 학과평가부터 적용한다.
6. 본 규정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7.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9.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10. 본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1.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2.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·서식

· 학과(부)평가 규정 [별표서식]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_2022.07.11.hwp

별표·서식 파일은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세요.